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981호
2. 발 의 자 : 황유정 의원(찬성자 45명)
3. 발의일자 : 2025년 08월 11일
4. 회부일자 : 2025년 08월 14일

II .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2022. 7. 5.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및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III . 주요내용

가. 시민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나.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다. 위원회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송부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서울시의회에 보고 및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라. 시장이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을 법률에 따라 정비함(안 제12조제2항)

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4항)

사.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

Ⅳ.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조례에서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고, 정책환경변화에 따라 더 이상 불필요해진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됨.

2. 개정조례안의 발의 배경

- 동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이행계획의 수립 및 점검을 원활히 하며, 주요 행정 계획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체계를 수립하고자 2017년 1월에 제정되었음.
- 이후 2022년 1월에 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에서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 법률에 맞춰 기본전략의 수립 주기를 변경하고, 인용조문과 용어를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를 개정(2022.12.30.)하였음.
- 또한 지난 제331회 정례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의 제·개정 시 지방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과 그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를 신설하는 등 동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바 있음.
- 그러나 동 조례는 법률과 달리 여전히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관련 조문이 누락되어 있고,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점검 주체와 점검

결과의 송부대상이 뒤바뀌어 있으며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의 상호협력 관련 조문이 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조례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3.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가. 시민과 사업자의 책무 신설 등(안 제4조 신설)

- 안 제4조는 시민에게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대한 참여·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자에게 기업활동에 있어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기초한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신 설>	제4조(시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전략에 기초하여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 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5조가 국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대한 참여·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사업자에게 기업활동에서 동 법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¹⁾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임.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이는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확인한 것이며 시민과 사업자에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서울시의 추진 의지를 공식화한 선언적 규정으로 볼 수 있음.

나.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신설(안 제7조 신설)

- 안 제7조는 자치구의 지방추진계획이 시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신 설>	제7조(추진계획의 협의·조정) 시장은 자치구의 지방추진계획이 시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0조제2항²⁾은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시·군·구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도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다시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음.

2) 제10조(추진계획의 협의·조정)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도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 추진상황의 점검 및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규정 개선(안 제8조 및 제10조)

- 안 제8조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하여금 최근 2년간의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에게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며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안 제10조는 지속가능성 평가와 관련하여 동 개정조례안의 조문 신설에 따라 변경되는 조 번호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서 누락된 지속가능성 평가의 주기를 법률과 동일하게 2년으로 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u>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시장은 최근 2년간의 추진계획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시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u>	<u>제8조(추진상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는 최근 2년간의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u> <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u> <u>③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생략)</u> <u>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확정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u> <u>③ (생략)</u>	<u>제10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현행과 같음)</u> <u>② -----</u> <u>-----제8조제1항-----</u> <u>-----포함하여 2년마다-----</u> <u>-----.</u> <u>③ (현행과 같음)</u>

- 이 중 추진상황의 점검 등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1조는 지방위원회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며, 이러한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추진계획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조례 제6조에도 추진상황의 점검과 관련된 규정이 반영되어 있으나 점검 주체가 지방위원회이고 점검결과에 대한 송부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인 법률과 달리 동 조례에는 점검주체가 시장, 점검결과에 대한 송부대상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뒤바뀌어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은 점검 주체를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임.

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제출(안 제11조제3항)

- 안 제11조제3항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② (생략) <신설>	제11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다시 명시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음.

마. 위원회 기능 정비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12조 및 제18조)

- 안 제12조 및 제18조는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생 략) 2. <u>지속가능발전지표</u> 작성에 관한 자문 3. <u>추진계획</u> 추진 상황 점검 4. <u>주요시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u> <u><신 설></u> 5. (생 략) <u><신 설></u> <u><신 설></u> 6. 제7조제5항에 따른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7. (생 략)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u>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및</u> --- ----- 3. <u>추진계획 협의·조정 및</u> ----- ----- 4. <u>정책의견 제시</u> 5. 제9조제5항에 따른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 통보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u>지방보고서의 작성</u> 8. <u>교육·홍보</u> <u><삭 제></u> 9.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따른다.</u>

- 이 중 위원회 기능의 정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9조³⁾에 따른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참고한 것으로 지속가능성발전지표 및 추진계획 관련 내용을 법률과 유사하게 개선하고, 동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정책의견 제시, 지방보고서의 작성, 교육·홍보에 관한 기능을 추가한 것임.

3)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1.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 또한 동 조례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위원이 심의·자문할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안전’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제척·기피·회피를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자 서울시가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기준이 되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척·기피·회피 규정⁴⁾을 따르도록 명시하였음.

바.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신설(안 제20조)

- 안 제20조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등을 위해 시장이 서울시 소속 공무원 중에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임.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신 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4)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동 법 시행령 제20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은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담당부서인 기획조정실의 국장급 공무원을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있음⁵⁾.
- 이와 같이 안 제20조는 법률에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실제 서울시정에 서도 적용되고 있으나 동 조례에는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안 제24조)

- 안 제24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도록 명시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제21조(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제24조(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의 협력 규정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녹색성장의

5) 기획조정실 내에서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담당관의 소속에 따라 당초에는 재정기획관이었으나 올해 7월 조직개편에 따라 평가담당관이 정책기획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정책기획관이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으로 지정됨.

하위개념으로 간주되던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동 조례 제정 당시 유사한 개념을 심의하는 위원회 간의 협력을 위해 삽입된 규정임.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지속가능발전을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동 조례에서는 불필요한 규정임.
- 따라서 안 제24조는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동 조례에서 녹색성장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통해 서울시 조례를 현행 지속가능발전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아. 국제협력 관련 규정 신설(안 제25조)

- 안 제25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국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참고하여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제도 및 정책을 정비하도록 하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외국의 동향 및 정책 등의 정보를 기업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음.
- 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 및 제31조에 대응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누락되어 있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조례안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③ (생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규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동향·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국제협력 등) ①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 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시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향·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시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종합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2022년 동 조례의 전부 개정 및 후속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이는 법령과 조례가 규정하는 바를 일치시켜 그 적용과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서울시 역시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따라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및 이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원안 동의하고 있는 바, 법률 및 행정실무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